

제4차 포럼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제4차 포럼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2020.11.04.(수) 15:00

부산광역시 의회 2층 중회의실

| 주 최 |

부산인권정책포럼, 인권도시부산(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단체)

제4차 포럼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2020.11.04.(수) 15:00

부산광역시 의회 2층 중회의실

| 주 최 |

부산인권정책포럼, 인권도시부산(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단체)

진행

1부 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시 간	내 용
15:00~15:10 (10')	사회 / 최진경,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 • 개회 • 참석자 소개 • 여는 인사 : 정귀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 축하 인사 :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5:10~16:00 (50')	충청남도 인권행정 사례발표 (조례,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 발제1: 이진숙,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의장 • 발제2: 김혜영, 충남인권센터 센터장 • 질의응답
16:00~16:05 (5')	휴식

2부 인권도시 부산

부산형 인권행정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중간보고 및 토론회

시 간	내 용
16:05~17:05 (60')	좌장 / 최영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발제: 송시섭,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광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상대,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김혜영, 충남인권센터 센터장 이진숙,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종합토론
17:05~17:10 (5')	• 마무리 및 폐회

충남인권행정, 비판적 검토

2020. 11. 4.
충남인권위원장 이진숙

2014. 충남 도민 인권 선언

Chungcheongnam-do
Resident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충남 도민 인권선언



우리는
인간에게 **□□**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2018, 인권조례 폐지와 제정

충남인권기본조례

제1장 총칙

1조(목적), 2조(정의), 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4조(도지사의 책무), 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7조(인권증진시책토론회),
8조(인권지수의 개발), 9조(인권영향평가),
10조(인권교육), 11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운영),
12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2018, 인권조례 폐지와 제정

제3장 인권위원회

14조(설치 등), 15조(구성), 16조(운영),
17조(독립성 및 신분보장), 18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제4장 인권센터

19조(설치/운영), 20조(구성), 21조(직무의 독립성),
22조(인권보호관 운영), 23조(상담 및 조사)
24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25조(지원)

제5장 보칙

26조(표창), 27조(비밀엄수), 28조(준용), 29조(시행규칙)

인권위원회 관련 규정

◆ 제14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 · 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 자문
3.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 ·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인권위원회 활동사례

UPDATED. 2020-03-02 18:29 (월)

충남도민인권선언 5주년 및 충남인권기본조례 제정1년 기념 세미나

전해의 자연환경과 471

암·요양

전체

HOME > 충남 > 충

충청남도

이순종 기자 |

충청남도 인
'충청남도 도
며, 도민의
했다.

이들은 이날
인권 보호 및
대한 인권교



인권위원회 활동사례



2020.
8. 19 (수) 14:00 - 16:30

충청남도의회
인터넷방송
생중계

사례



인권센터 관련 규정

◆ 제19조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도민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협력
5. 인권분야 정부기관/비영리민간단체/법인과의 교류/협력
6. 인권증진활동(상담사례 등) 보고서 발간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 ① 도지사는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 ② 인권보호관은 11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인권보호관**과 6인 이내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권센터 활동사례

○ 상담조사 처리절차

- ▶ 도청과 관련된 인권침해사항에 대하여 상담·접수 후 도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합니다.

▶ 상담조사 처리절차 1

· 인권침해 사항 상담 및 접수

· 조사

· 각하결정
· 종결처리

1. 임용 면접과정에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2017. 4. 7)
2. 도청 공무원의 산하기관 연구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2019. 5. 14)
3. 사회복지법인 ○○○ 갑질 진정(2019. 10. 21)
4. 출자출연기관 ○○○ 내 인권침해 진정(2019. 10. 21)



- 인권센터장



- 도지사



- 조사대상기관의 장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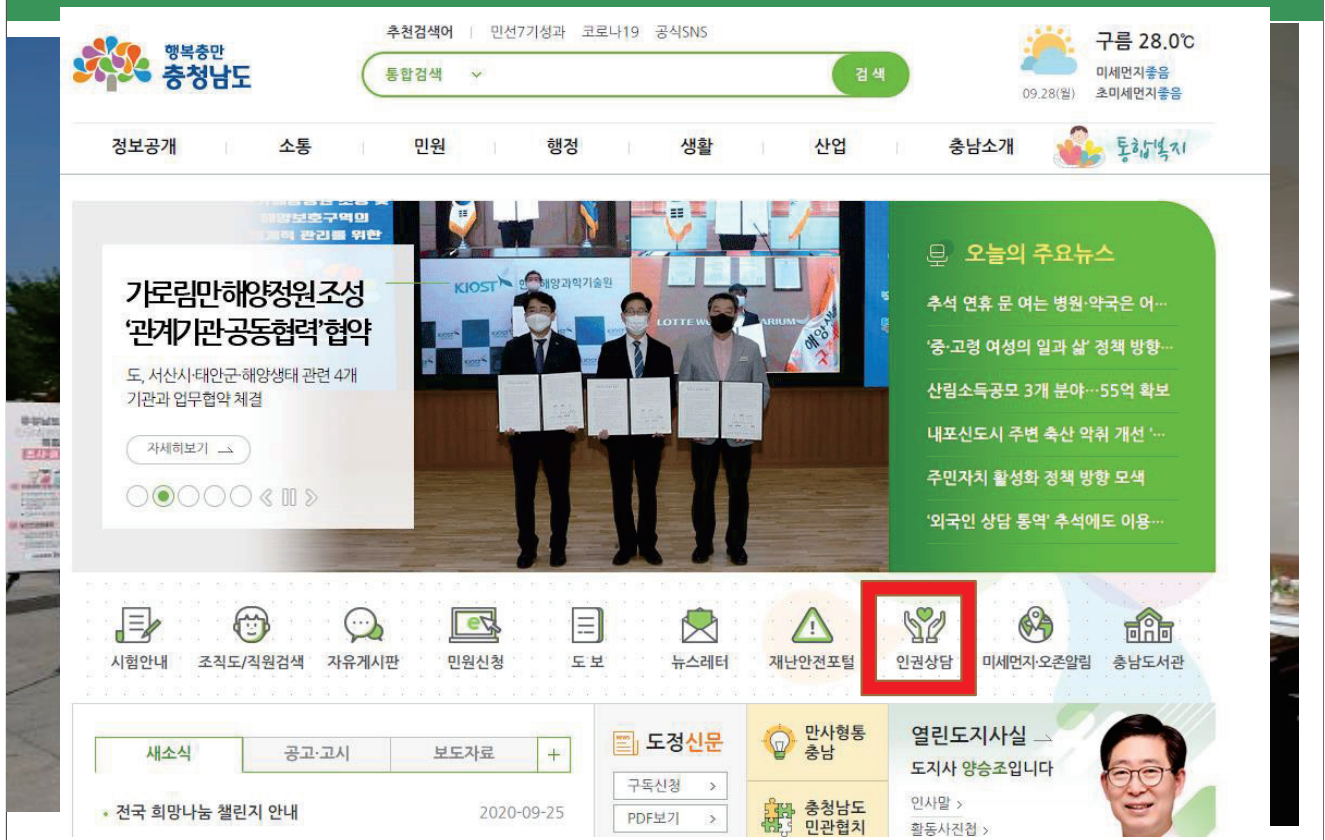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5점(매우 만족) ○4점(만족) ○3점(보통) ○2점(불만) ○1점(매우 불만)

평가하기 >

인권센터 활동사례



인권기구에 대하여

인권보호

상담/ 구제
침해/차별행위

사후적
권리구제

인권증진

교육/ 홍보/ 협력
정책/법제도 개선

예방적
권리구제

그림 출처 : (사)인권정책연구소

인권기구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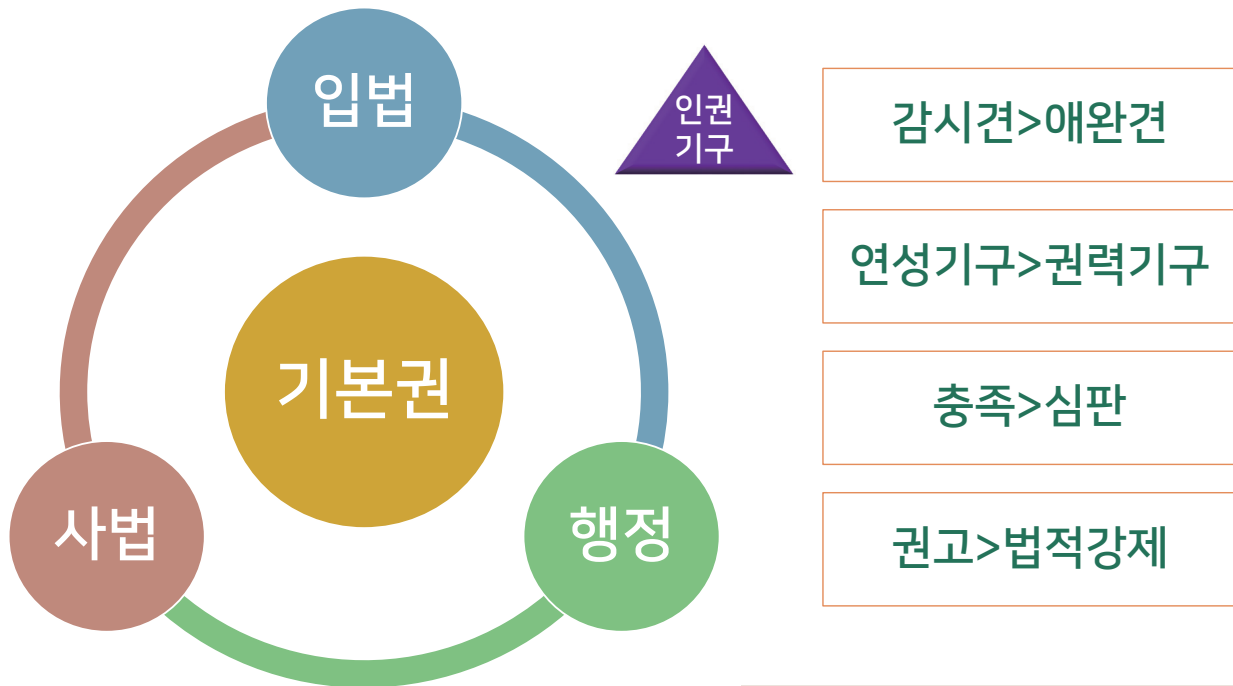


그림 출처 : (사)인권정책연구소

지역 인권기구에 대한 문제의식

- 인권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가?
- 인권기구는 실효적으로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보호관회의 연계는?
- 권고는 얼마나 수용되는가?
- 지역의 인권역량(행정+주민)은 강화되고 있는가?

- 인권위원 연임제한 / 인권위원의 열의에 좌우되는 위원회(독립적 집행 불가)
- 인권행정 전담부서 / 인권증진시책(행정) 모니터링 난제
-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집행력 / 결정과 권고의 권위, 수용성, 확장성
- 행정청, 교육청, 의회의 인권감수성
- 공무원, 주민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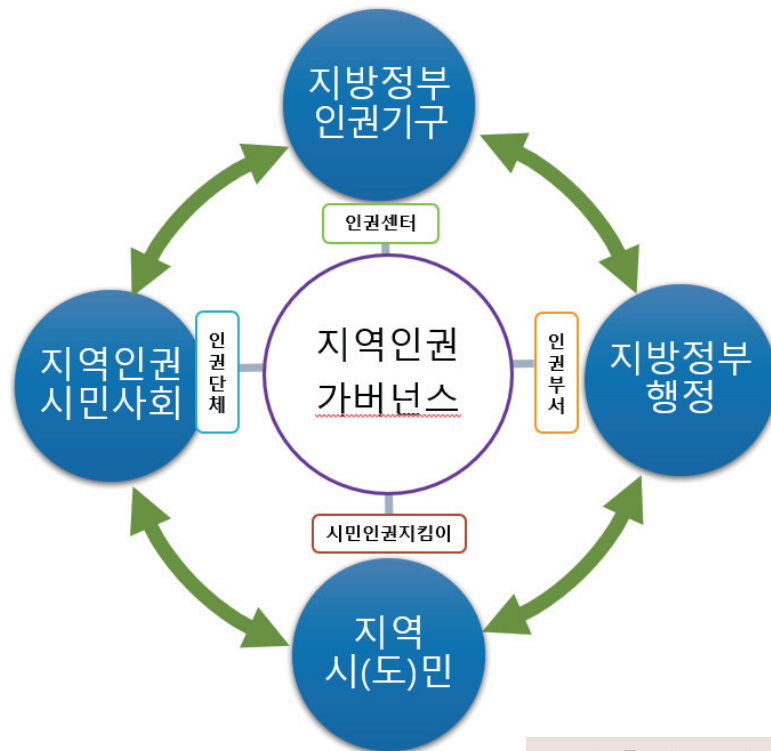


그림 출처 : (사)인권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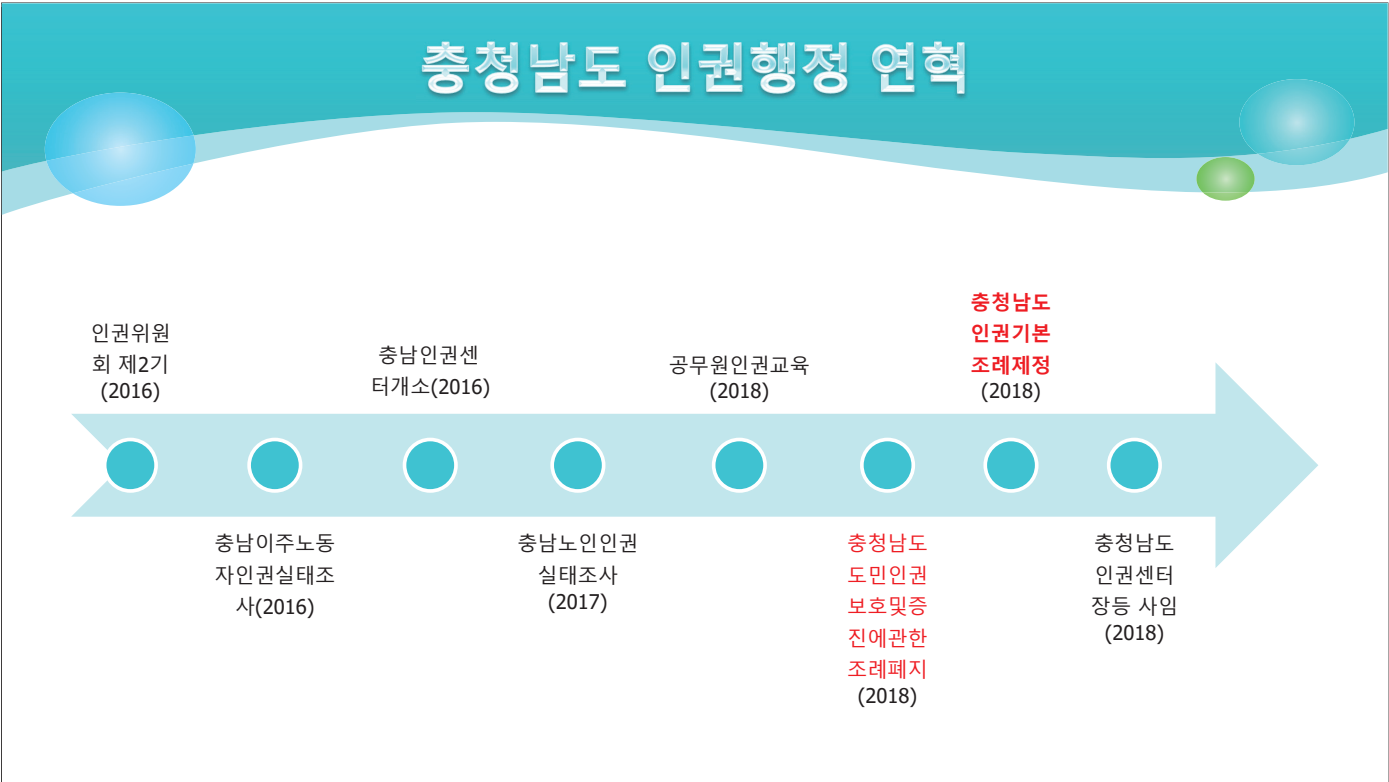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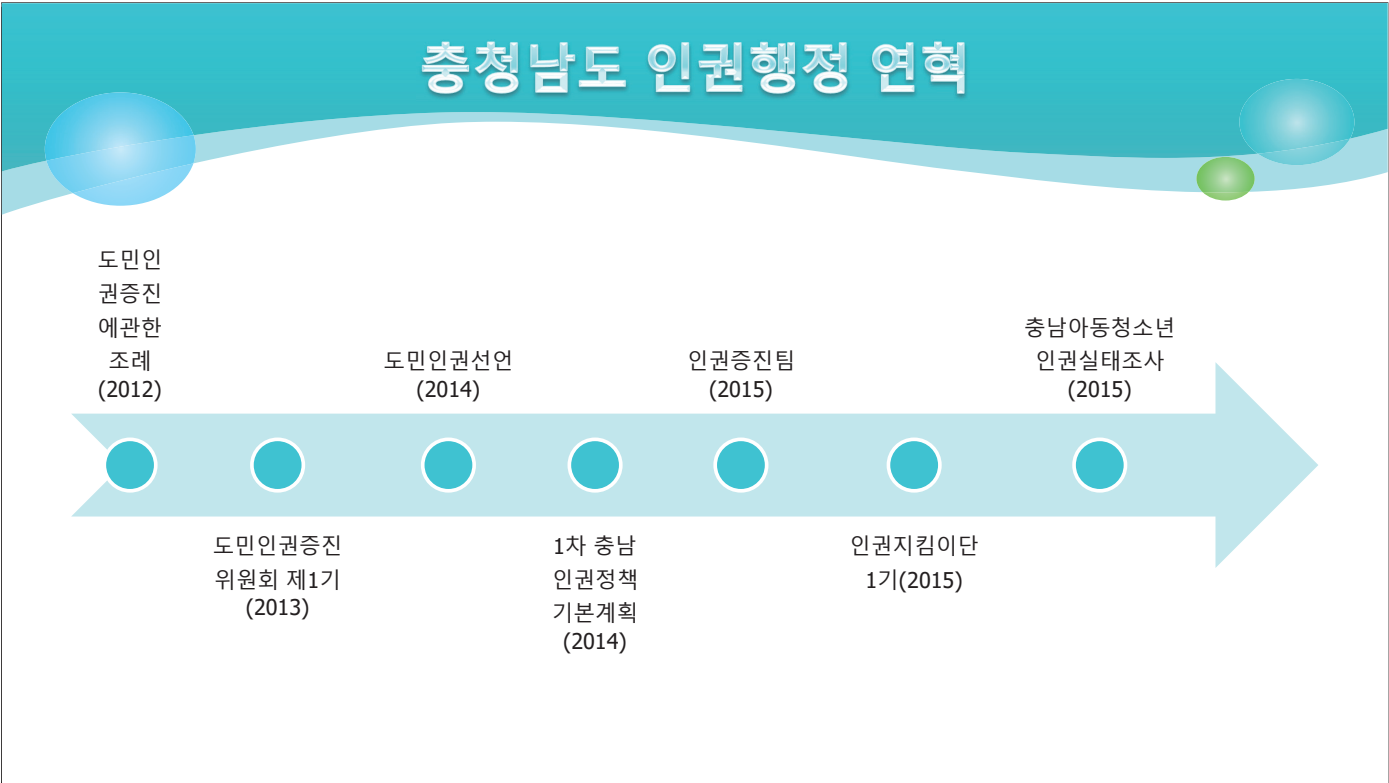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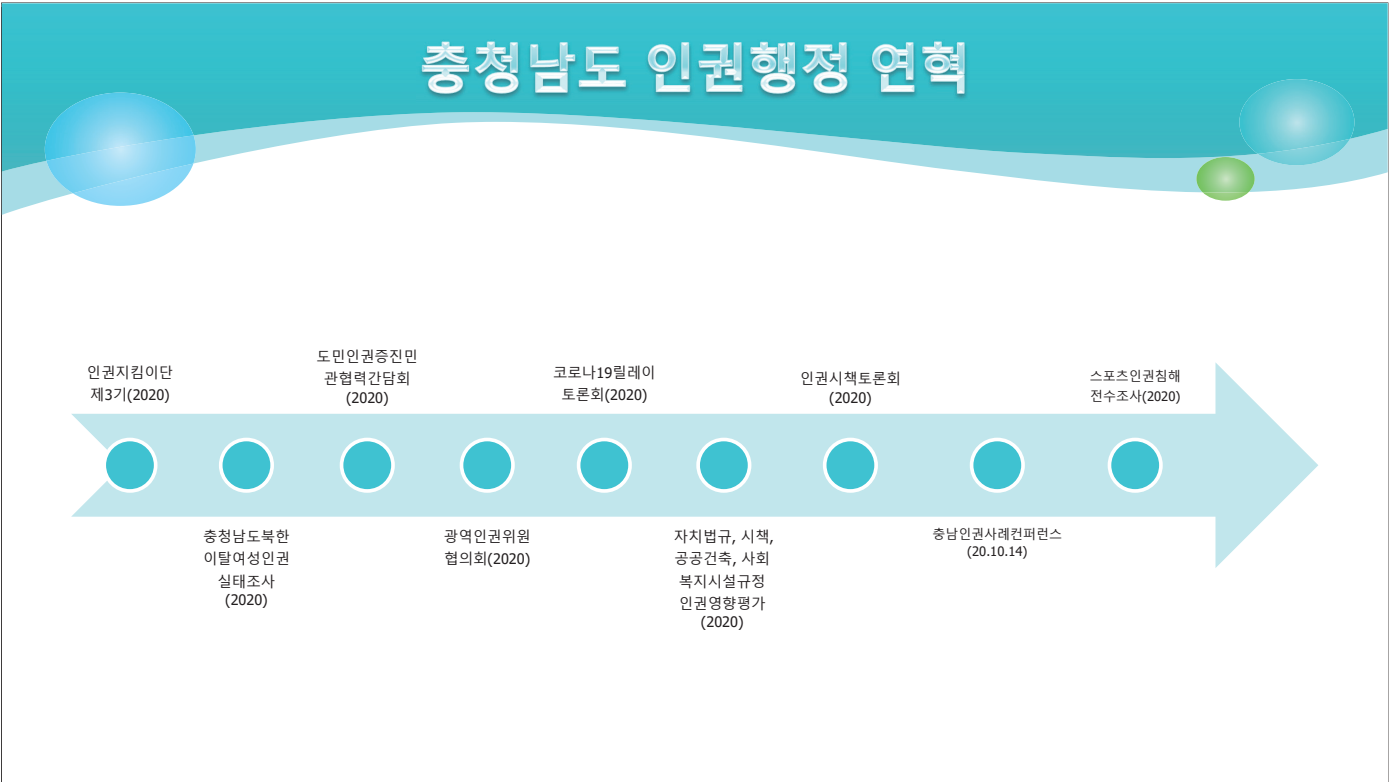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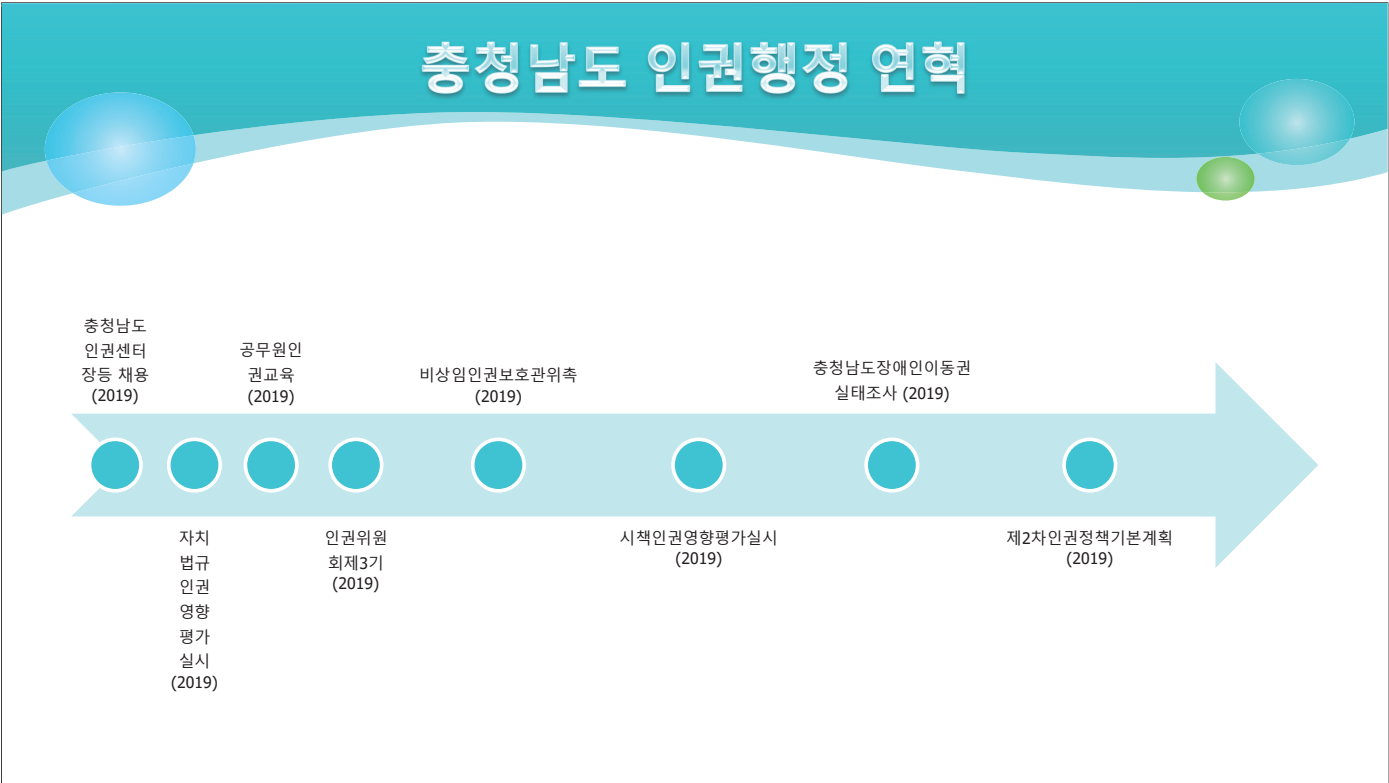
충청남도 인권행정과 인권센터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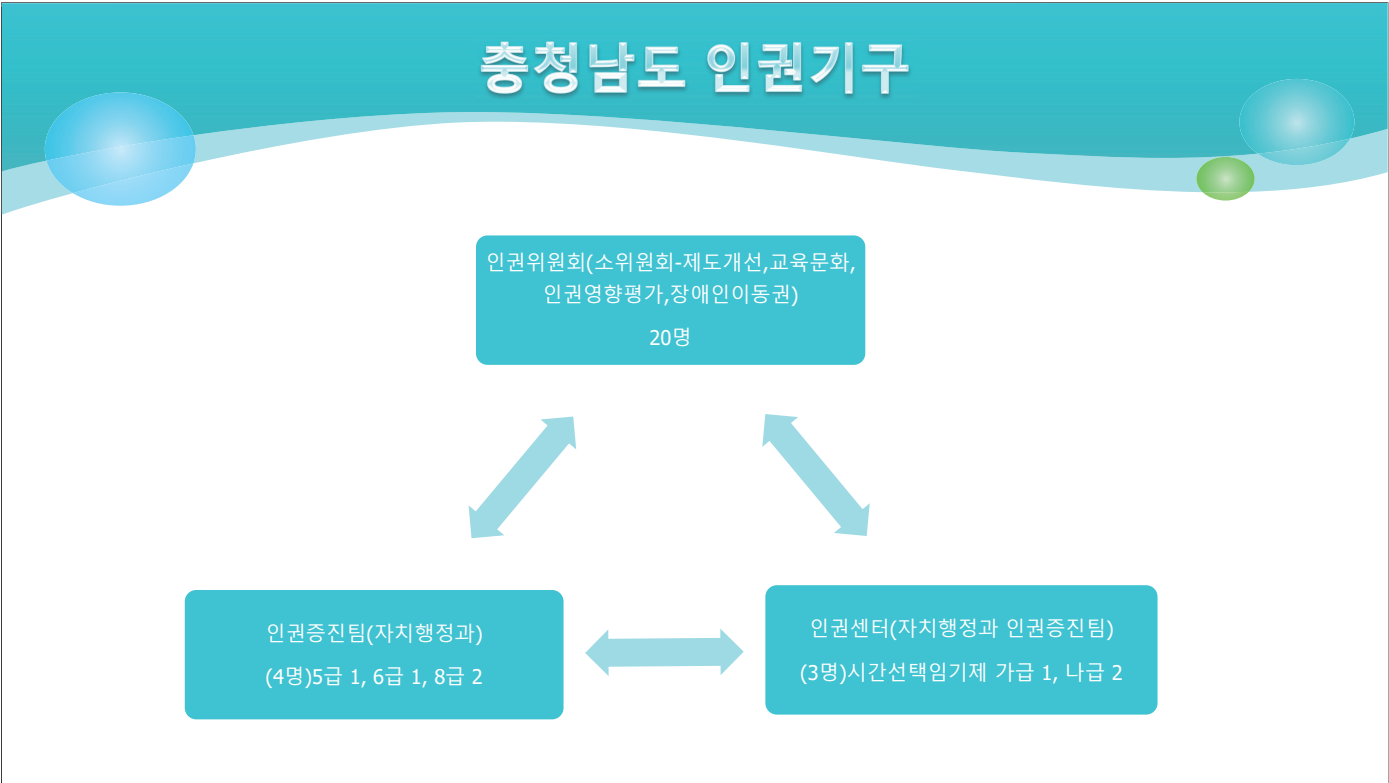
김혜영 충청남도인권센터장

목 차

- 충청남도 인권행정 연혁
- 충청남도 인권기구 소개
- 충청남도 인권센터 역할
- 충청남도 인권행정의 과제







충청남도 인권기구		
인권위원회	인권증진팀	인권센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소위원회 운영	• 인권시책토론회 •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지킴이단 • 인권교육 • 인권기본계획 • 인권공모사업 및 행사 • 민주화운동계승사업 • 민간인 학살피해자지원 • 범죄피해자지원	• 인권침해상담조사구제 • 도민인권보호관회의 운영 •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 시책 등) • 인권실태조사(매년) • 인권단체교류협력 • (월간)인권정책동향

충청남도인권센터의 역할

○ | 인권센터 개요

- 충청남도 직영(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속)
 - 센터장 1명(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인권보호관 2명(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사무분장(인권센터장: 센터 총괄, 인권실태조사, 민간교류협력/ 인권보호관 1: 인권침해상담조사구제업무, 도민인권보호관회의,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인권보호관 2: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 시책등), 월간인권정책동향, 서무업무)

○ | 도민인권보호관(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

-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임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및 구제내용에 대한 과반수 합의 결정
- 구성 : 상임인권보호관 3명(인권센터), 비상임인권보호관 5명

● | 인권센터의 독립성

- 인권침해상담조사구제업무는 인권센터장에게 전결권 있고, 그 밖의 업무는 인권증진팀의 협조를 받아 자치행정과장에게 전결권 있음.

인권센터 사무분장

인권센터장(총괄,인권실태조사,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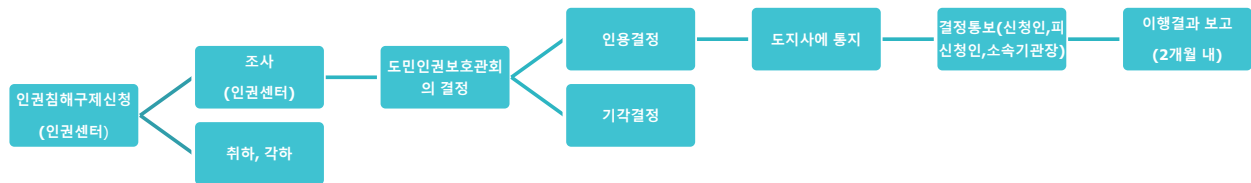
인권보호관

- 인권침해상담조사구제
- 도민인권보호관회의 운영
-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 인권사례보고회
- 인권침해결정레집

인권보호관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시책인권영향평가단 운영
-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 인권영향평가보고서
- 월간 인권동향 ○ 서무

인권침해 상담조사 구제 절차



충청남도 인권행정의 과제

○ 인권전담부서(과) 설치

- 현재 인권증진팀과 인권센터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상담조사만 제외)
- 인권센터의 업무 중 인권침해상담조사구제 업무와 인권영향평가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 인권위원회의 회의와 행사가 많아져 인권증진팀의 업무도 확대되고 있음.

충청남도 인권행정의 과제

- 인권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 인권단체와 민관협력 협의체 구축으로 인권거버넌스 실현
 -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20.5.22)
 - 충남인권사례컨퍼런스(20.10.14)
 - 충남인권증진협의체 추진(2021)
- 충남 기초지자체 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전담 공무원 배치로 시군인권행정 마련

부산인권정책포럼

I 취지와 목적

□ ‘인권도시 부산의 정책적 토대구축’

- 인권현안 발굴
- 인권정책 연구
- 네트워크 구축
- 공동사업 추진

II 경과

□ 2019년 12월 18일 발족 및 1차 포럼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 2020년 1월 6일 오거돈 부산시장께 드리는 의견서 발표

- ‘2020년 새해,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첫걸음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이다!’

□ 2020년 1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 (10명)
 - 정귀순 사)이주민과함께 이사 (포럼 운영위원장)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포럼 운영부위원장)
 -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정책실장 (포럼 간사)
 - 박용민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센터장
 -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오다빈 사)노동인권연대 사무처장
유선경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이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이규희 사)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 2020년 5월 8일 제2차 포럼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개최

□ 2차 포럼 참석자들 공동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 확보 의견서 전달

- 2020년 5월 21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및 박인영 시의회의장께 의견서 전달
“평소에 할 수 없는 것은 재난 상황에도 할 수 없습니다!”
—‘재난 상황에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
- 6월 29일, 부산시로부터 회신 받음
- 8월 3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께 부산시 회신에 대한 검토의견서 전달

□ 2020년 8월 25일 3차 포럼 ‘차별없는 인권도시 부산만들기’ 한일포럼 개최

□ 2020년 11월 4일 4차 포럼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개최

□ 2020년 12월 10일 5차 포럼 ‘2020,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예정

Ⅲ 함께 하는 이들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뇌병변장애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포럼,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사회복지연대, 인권도시 부산, 이주민문화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부산인권정책포럼 운영규정

제정일 2020. 4. 21

제1조 (명칭) 이 포럼은 부산인권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Busan Human Rights Policy Forum”로 또는 약칭 “BHRPF”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포럼은 부산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정책제안,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부산의 인권정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기별 정례포럼
2. 인권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
3. 부산인권현안과 관련된 정책 검토 및 제안
4. 부산지역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제4조 (회원의 자격) ①포럼의 회원은 제2조 목적에 찬성하며 포럼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기관회원은 법인 혹은 단체를 말하며 기관회원은 그 임직원 중 1인 이상의 기관등록회원을 지명한다.

제5조 (회원의 가입) 포럼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혹은 기관은 포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의 절차를 밟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포럼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임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포럼 운영규정 준수

2.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납부

제8조 (회비)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탈퇴 및 제명) ①포럼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탈퇴원을 제출하지 않고 1년 이상 포럼에 참석하지 않거나, 포럼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포럼의 준비와 사업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기 운영위원은 발족 포럼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2기 이후 위원은 홀수년 마지막 포럼에서 만장일치로 위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④결원으로 인한 새로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및 포럼 회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포럼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포럼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며, 중요한 현안이 있을 시 운영위원의 제안으로 운영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재원) 포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행사별 참가비 및 자발적 모금
2.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후원금

제16조 (회계 및 관리) 포럼의 회계 사무는 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부칙

운영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인권도시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 목적

- ‘부산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2020년 3월 6일 시의회에 등록하여 활동을 시작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 구성

- 최영아 의원(대표), 구경민 의원, 김광모 의원, 김혜린 의원, 도용희 의원, 이정화 의원

□ 활동

- 연구포럼 추진 : 〈부산인권정책포럼〉과 2020년 3차 포럼 공동 개최
- 연구과제 진행 중
 - 자치법규상 차별적 및 인권침해적 용어 정비
- 연구프로젝트 진행 중
 - 인권과 행정이 만나다 - 부산형 인권행정 플랫폼 구축

메 모
